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정책의 추진방향

Tobacco Labeling Regulations; Implications from FCTC COP3 of WHO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우리나라는 협약 제11조(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비준이후 3년 이내(2008년까지)에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수정할 의무가 있다. 2008년 12월 시행된 담배갑 포장의 건강경고에 발암물질표기를 통해 건강경고가 더 강화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건강경고 및 표시제도의 본질적인 개선과제가 아직 남아있다. 첫째, 건강경고의 확대 및 그림경고의 도입, 둘째, 저타르, 라이트 및 마일드와 같은 오도문구의 금지, 셋째, 방출물 및 성분 표기규제 완화 등이다. 담배갑 포장 및 라벨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은 단순포장에 있다. 담배갑 포장의 디자인이나 다른 회사라벨관련 요소들로 인해 일반인이 담배에 대해 잘못 인식하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경고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금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앞서 본문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에서는 담배갑 포장 및 라벨규제의 도입 및 수정 후 6개월에서 9개월간의 메시지 인식과정과 흡연위험인식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효과적인 담배갑포장 및 라벨정책을 위해서 연구정보가 국내 축적되어야 하고, 국제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1. 배경

우리나라는 2003년 7월 21일 담배규제기본협약에 서명하였으며, 2005년 5월 비준하였다. 우리나라가 비준국이 됨에 따라 비준일 기준 90일 이후부터 FCTC 이행의무가 부여되었고,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국내법제도를 수정하여야 한다. 필수적인 이행사항은 제11조와 제13조이며, 제11조인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대한 규제는 협약 발효 3년 이내에 이행하도록 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까지가 의무이행 시한이었다. 협약 제13조 담배제품의

광고, 판촉 및 후원에 대한 전면적 금지 또는 규제는 협약 발효 후 5년 이내가 의무이행 기한이고, 우리나라는 2010년까지가 기한이다.

FCTC협약 제7조(담배수요 감소를 위한 비가격대책)와 제9조(담배제품의 검사, 측정, 단속)에서는 협약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제1차 총회에서 가이드라인 개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작업반 구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제2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1차 총회에서 결정한 불법무역 관련 의정서 개발을 위한 국가 간 협상회의 일정 및 가이드라인 개발 관련 working

group 운영일정을 계획하였고, 협약 제8조(담배 연기 노출로부터의 보호)의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승인하였다. 2008년의 제3차 총회에서는 세 가지 가이드라인 5.3조(담배업계로부터 금연정책보호), 11조(담배제품포장 및 라벨), 13조(담배광고, 판촉, 후원) 등이 승인되었다

담배갑 포장 및 라벨 정책은 협약의 의무이행 조항이라는 점 외에도 효과적인 담배규제정책의 하나로 제시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타바코프라이니셔티브에서는 담배사용의 모니터링,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 흡연자의 금연지원서비스, 담배사용에 대한 경고, 담배광고 판촉후원의 금지, 담배제품에 대한 세금부과 등을 효과적이고 핵심적인 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¹⁾ 담배규제기본협약 제11조에서 건강경고란 담배 포장 및 라벨에 건강경고메시지를 부착하여 국민에게 건강경고메시지를 전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건강경고의 목적은 국민에게 건강위험을 알리고 담배사용을 감소시키는 데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담배갑 포장에 건강경고문구를 부착하여 실시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건강경고제도와 관련된 제11조 협약의 규정과 국내적용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2. 라벨제도에 대한 협약추진 현황

2008년 11월 제3차 FCTC총회에서 제11조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승인되었다. 협약의

이행을 위해 개발된 가이드라인은 최우수관행(best practice)으로서,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지침이 되며 협약이행의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게 되었다. 협약이행보고서의 도구에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에서 지향하는 원칙과 권고사항을 우리나라 정책에 단계적·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3차 총회에서 결정된 가이드라인들에는 협약이행의무사항인 제11조와 제13조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다. 협약이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도입해야 할 정책개발과 이행보고를 위한 정책지표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이며 구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3. 협약 제11조와 가이드라인 개요

1) 협약 제11조의 요점

협약 제11조(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는 의무조항 중 하나로서 협약비준 후 3년 이내에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규제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CTC 협약11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방출물과 관련된 정보 및 건강효과 등에 대한 오도성 문구의 규제
-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은 허위·오도·기

1) WHO, MPOWER: a policy package to reverse the tobacco epidemic, 2008.

구분	FCTC 가이드라인	국내제도개선 검토사항
담배경고문구 표기면적 확대	협약 11조 1의 b(iv)항에서는 경고문구의 크기가 50% 이상일 것을 권고하며, 30% 미만이 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11조 가이드라인에서 50%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함.	○ 우리나라는 현재 30% 경고문구를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음. ○ 당사국의 이행 현황 : 멕시코, 호주 등 4개국은 60% 이상으로 시행, 캐나다 등 22개국은 50% 이상, 노르웨이 등 4개국에서는 40% 이상으로 시행 ○ 제도개선 검토방향 - 표기면적을 최소한 40%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타르, 니코틴 성분표기 폐지	타르, 니코틴 성분함량표기가 국민인식을 오도할 수 있으므로 표기하지 않도록 권고함. - “적게 방출하는 담배”가 “많이 방출하는 담배”보다 덜 해로운 것처럼 암시하여 소비자 등 오해 가능성이 있음.	○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니코틴, 타르 함량을 담뱃갑 측면 표기 중 ○ 제도개선 검토방향 - FCTC 제3차 총회에서 가이드라인(11조) 채택으로 국내에서도 폐기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담배사업법 개정사항)
경고그림의 표시	- 그림경고문구가 더 효과적인 점을 감안하여 담배갑 양면에 표기할 것을 권고함. - 그림경고문구 표시를 위한 Pre-test 실시 필요. 문화적 수용성을 고려해야 함. ※ '08년도까지 18개국에서 완료하였고, '10년도까지 7개국에서 도입예정 - 그림경고의 저작권은 당사국 정부에서 소유하도록 권고함.	○ 그림경고문구 제도화 추진 중(국회에서 계류 중)
담배갑포장 및 라벨규제의 주무부처	당초 가이드라인에는 담배규제의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주무부처를 보건부처만으로 제한하였으나, 각국의 국내법 현실을 반영하여 관련 부처로 규정하고 보건부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수정함.	○ 담배갑 포장 및 라벨규제에 관련 부처의 협의 필요 및 보건부처의 의견반영

만적이거나, 제품의 특성, 건강에 대한 영향, 위험성 또는 배출물에 관한 잘못된 인상을 조장할 개연성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담배제품을 홍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저타르”·“라이트”·“울트라 라이트” 또는 “마일드” 등 특정 담배제품이 다른 담배제품보다 덜 유해하다는 잘못된 인상을 직·간접적으로 조

장하는 용어·문구·상표·형상 또는 기타 표시가 포함된다.

- 건강경고문구
-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담배사용의 유해성을 기술하는 건강에 관한 경고문구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타 적절한 전달문구를 포함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주요 표시면들²⁾의 50% 이상 크기가 요구되나, 적어도 반드시 주요 표시면들의 30% 이상 차지³⁾ 해야하고, 당사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문구의 순환⁴⁾이 필요하다.

제11조(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이 자국에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법에 따라 다음 각호를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시행한다.	(1) 권한 있는 국내 당국의 승인 (2) 문구의 교체 (3) 넓은 면적, 명시성, 가시성 및 판독성 (4) 원칙적으로는 주요 표시면들의 50% 이상 크기가 요구되나, 적어도 반드시 주요 표시면들의 30% 이상 차지 (5) 사진이나 그림의 형식, 또는 이의 일부 포함이 가능
가.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은 허위·오도·기만적이거나, 제품의 특성, 건강에 대한 영향, 위험성 또는 배출물에 관한 잘못된 인상을 조장할 개연성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담배제품을 홍보하여서는 아니 되며, 여기에는 특정 담배제품이 다른 담배제품보다 덜 유해하다는 잘못된 인상을 직·간접적으로 조장하는 용어·문구·상표·형상 또는 기타 표시가 포함된다. “저타르”·“라이트”·“울트라 라이트” 또는 “마일드” 등의 용어가 이에 포함될 수 있다.	2. 담배제품의 각 갑포장·포포장·기타 외부 포장 및 라벨은 이 조의 제1항나호에 기술된 경고문구 이외에도 국내 당국이 규정한 담배제품의 관련 성분 및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나. 담배제품의 각 갑포장·묶음포장·기타 외부 포장 및 라벨도 담배사용의 유해성을 기술하는 건강에 관한 경고문구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타 적절한 전달문구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경고문구 및 전달문구는 다음 각목을 충족하여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이 조의 제1항 나호 및 제2항에 기술된 경고문구 및 기타 문자정보가, 그 당사국의 단일 또는 복수의 주요 언어로, 담배제품의 각 갑포장·포포장·기타 외부 포장 및 라벨에 기재되도록 요구한다. 4. 이 조항의 목적상, 담배제품과 관련한 “외부 포장 및 라벨”이라는 용어는 제품의 소매 판매에 사용되는 외부 포장 및 라벨에 적용된다.

2) 당초 초안에는 단수의 형태인 ‘주요 표시면’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최종 교섭과정에서 ‘주요면들’로 수정됨으로써, 보통 담배갑의 경우에는 앞면과 뒷면 2면이 ‘주요면들’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3) 개도국측은 경고문구의 크기가 최소한 담배갑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데 반하여, 선진국측은 30% 또는 그 이하를 주장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타결된 문안은, 50% 이상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천명하면서도, 실질적인 시행에 있어서는 30%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4) ‘문구의 교체’란 여러 가지 경고문구를 주기적으로 바꾸는 것으로서, 보다 많은 경고 문구를 흡연자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협약 11조 가이드라인의 건강경고제도의 방향⁵⁾

가이드라인은 담배갑 건강경고라벨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을 권고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고, 성공적인 정책수행의 사례를 제시한다. 건강경고라벨은 일반인에게 흡연의 해악을 알리고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기본원칙은 효과적인 건강경고라벨정책과 근거에 대한 국제적 정보교류를 통하여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을 하는 데 있다.

가시성이 높은 건강경고와 메시지가 효과적이며 그림경고가 더 눈에 띄게 되고, 정서적인 반응을 강하게 불러 일으켜 흡연자들에게 금연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키고, 담배소비를 줄이게 한다.

그림으로 표현된 경고가 더 오랜 시간에 걸쳐 효과적이고, 특히 저학력인 사람들과 아이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효과적이다. 효과성을 증대시키는 다른 요인은 담배경고와 메시지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효과성을 증대시키는 디자인구성은 흑백보다 컬러사용; 담배갑의 양면 표기; 다양한 건강경고와 메시지를 동시에 표시; 정기적 순환, 건강경고 및 메시지의 순환과 새로운 메시지 도입 등이다.

디자인의 구성요소에는 건강경고의 위치와 크기, 색상 등이 포함된다. 담배상품 포장위에 사용되는 그림 및 이미지의 오너쉽 또는 전체저작권(full copyright) 등은 정부에서 소유하도록 한다. 매스미디어 캠페인과 인터넷 상의 다른

담배 규제 개입에서 이미지를 사용하는 최대한의 유효성을 제공할 수 있고, 당사국에게 다른 법적 허가(license)를 보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건강경고의 메시지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메시지를 순환할 것이 권고된다. 순환방법의 방법 1은 건강경고 및 메시지 1세트를 정하고, 몇 년 후 새로운 법적 조치에 따라 순환시키는 것(예, 매 2년에서 5년). 방법 2. 초기부터 건강경고 및 메시지를 2개 이상 세트에 정하고, 일정기간 후(매 12개월에서 36개월) 교체한다. 새로운 세트에 대체되는 전환기간 중에는 이전에 사용하던 건강경고 및 메시지를 사용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세트를 교체하는 동안에 2세트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들면 6개월의 전환기간과 같이 법에 명시해 놓아야 한다. 경고문구의 내용에 건강 및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결과와 담배산업실행과 같은 다른 메시지에 대한 혁신적인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경고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의 항목을 포함할 것이 권고된다.

- i. 금연에 대한 조언
- ii. 중독성
- iii.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부작용의 결과 (예, 년 간 담배상품 구매 비용)
- iv.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영향
- v. 담배사용 결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증언
- vi. 중요한 타인에 대한 담배사용의 영향(예,

5) <http://www.who.int/fctc/guidelines/en/>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랑하는 사람의 조기 질병 및 조기사망)

건강경고의 전달방법은 권위적이고, 효과적이어야 하며 전달방식은 표적집단에 대한 연구 및 시장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건강경고 및 메시지는 문화적으로 적합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순, 명료, 간결(concise), 직설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담배갑 라벨규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상제품의 범위, 대상집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건강경고의 도입과 관련하여 공중에게 제안을 하고 대중참여를 독려하도록 해야 하지만 협약이행 속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담배상품(시가렛, 시가, 무연담배, 파이프담배, bidis, 물담배)에 대하여 다양한 건강경고 및 메시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인구집단별로 대상세분화된 건강경고개발이 권고된다.

오도성 문구의 사용 및 기한만료 표기를 금지할 것이 권고된다. 타르, 니코틴, 기타 방출물질의 양(yield per cigarette)에 대한 표기를 금지하도록 한다. 포장에 있는 브랜드 이름 외의 로고, 컬러, 브랜드 이미지, 판촉정보를 금지하는 대책을 수용하도록 해야 하고, 표준 색상과 폰트 스타일(단순포장)의 형태로 제품명이 제시되도록 해야 한다.

3) 제도의 개발과 정착을 위한 전략

당사국은 담배갑 포장 및 라벨링 규제 수행을 감독하는 책임기관을 법적으로 확실히 해야 한

다. 당사국은 정부가 담배규제조치 수행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법 시행에 대한 정부의 또 다른 분야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건부처는 라벨의 세부내용개발에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하도록(가이드라인 제 48항) 권고된다.

규제의 범위는 관할 지역에서 판매되는 담배상품 포장에 동등하게 적용하고, 국내 생산, 수입, 수출, 또는 국내면세점용 등의 담배상품 간 구별없이 적용하도록 법안을 상세화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담배상품 포장에 구성성분과 방출물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건강경고 및 메시지를 표시하는 비용을 담배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부담하도록 권고한다.

포장 및 라벨 규제정책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함으로써 이 정책을 이행하는데 근거를 다른 나라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담배상품 포장 및 라벨링의 모니터링과 평가는 법 규정을 강화, 확장,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정치적 대중적 지지를 증가시키는데 중요하다.

담배상품 포장 및 라벨링 규제에 대한 순응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베이스라인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추후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당사국은 법이 발효된 후 적어도 6개월에서 9개월까지 메시지 인지과정과 흡연 위험 인식을 측정하는 전략을 가지고, 건강경고 및 메시지의 순환 스케줄에 따라 법 준수에 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4. 국내외 건강경고정책의 현황

1) 국내 정책 현황

우리나라는 1989년 제정된 담배사업법 제25조(제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1항에서 제조담배의 갑포장지에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할 것을 규정한 바 있고, 1997년부터 경고문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담배사업법 제25조의 2(담배성분의 표시)에서는 담배 1개비의 연기 중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겉포장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에서는 담배갑 앞뒷면에

건강경고문을 부착하도록 규정하였고,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서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판매금지를 규정한 바 있다. 현재 담배갑 포장의 건강경고 크기는 앞뒷면 각각 넓이의 30%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2008년 12월부터 개정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건강경고시책에는 건강경고문에 발암성물질 5종(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을 추가로 표기하는 것을 포함하였으나 전체적인 건강경고문의 크기는 변하지 않았고,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고문구의 순환은 2년마다 하고 있다. 2008년 12월 개정된 건강경고의 내용은 “경고: 건강에 해로운 담배, 일단 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 등이 들어 있습니다.”이다.

그림 1. 국내 담배 건강경고 및 성분 표시제도의 사례



2) 외국의 정책현황⁶⁾

담배에 대한 포괄적인 경고는 청소년과 많은 젊은 성인들에게 담배의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WHO, 2008). WHO-FCTC(2003)는 협약 제 11조항에 의거하여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 담배갑 포장 및 라벨규제를 도입 및 강화하도록 촉진하고 있고, 2008년 현재 30% 이상의 담배갑 그림경고를 표기하는 국

가는 15개국이다(WHO, 2008). 새로이 그림경고를 도입한 국가는 파나마가 2008년에 법제화하였고, 스위스는 2010년 발효 예정이다(표 2). 2008년 WHO 보고서에 의하면 담배포장에 기만적 또는 오도성 용어사용을 금지하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OECD국가 23개국과 브릭스 국가 2개국 등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표 3).

표 2. 주요 국가의 그림경고 도입 현황

구분	국가	시작년도	경고그림 크기 평균(앞면/뒤면)	내용
1	캐나다	2000.12	50% (50%/50%)	- 매 2년 순환, 그림경고 16개사용, 상단 위치, 영어/불어 표기
2	브라질	2002.2	(앞,뒤면 중 한 면 100%)	- 매 2년 순환, 10개 그림경고 사용
3	싱가폴	2004.7	50% (50%/50%)	- 매 2년 순환, 6개 그림경고 사용, 상단 위치
4	베네주엘라	2005.1	(한 면이 100%)	- 10개 그림경고 사용
5	요르단	2005.1	60% (30%/30%)	- 1개 경고 사용, 하단 위치
6	태국	2005.3	50% (50%/50%)	- 매 2년 순환, 9개 그림경고 사용, 상단 위치
7	호주	2006.3	60% (30%/90%)	- 매년 순환(2개 set(각세트 7개 포함), 상단 위치
8	우루구아이	2006.4	50% (50%/50%)	- 8개 그림경고 사용, 하단 위치
9	칠레	2006.11	50% (50%/50%)	- 위치: 하단
10	인도	2007.2	50% (50%/50%)	- 4개의 그림경고 사용, 하단 위치
11	벨기에	2007.4~6	56%(48%/63%,경계선포함)	- 14개 경고그림 사용, 하단 위치, 독어, 불어, 플레미쉬 3개 국어 표기
12	홍콩	2007.10.27	50%(50%/50%)	- 매년순환(6개 메시지 각각), 상단위치, 영어/중국어 표기
13	루마니아	2008.7.1	50%(50% /50%)	- 14개의 그림경고 사용
14	뉴질랜드	2008.2	60% (30%/90%)	- 14개 그림 사용, 상단 위치, 영어/마오리족어 표기
15	영국	2008.10.1	(/ ,경계선 포함)	- 15개 건강경고 사용
16	스위스	2010년 발효 예정	56%(48%/63%,경계선포함)	- 14개 3가지세트의 경고를 순환예정

자료: Physician's smoke-free Canada

6) Physician's smoke-free Canada

표 3. 국가별 흡연경고관련 규제 비교

구분	국가	오도성 용어 사용 금지	면적	각 담배갑/라벨에 표시	흡연 위험성 묘사	문구의 가시성 (크고 분명하게)	순환
G7국가	미국	-	-	0	0	-	-
	영국	-	30%	0	0	0	0
	독일	0	30%	0	0	0	0
	프랑스	0	30%	0	0	0	0
	일본	-	30%	0	0	0	0
	캐나다	0	50%	0	0	0	0
	이탈리아	0	30%	0	0	0	0
브릭스 (BRICs) 국가	브라질	0	50%	0	0	0	0
	러시아	-	4%	-	-	-	-
	인도	0	50%	0	0	0	0
	중국	경고문구 비의무적					
아시아	싱가폴	0	50%	0	0	0	0
OECD 국가 (23개국)	한국	-	30%	0	0	0	0
	폴란드	0	30%	0	0	0	0
	멕시코	-	25%	-	-	-	-
	호주	0	60%	0	0	0	0
	뉴질랜드	-	60%	0	0	0	0
	스페인	0	30%	0	0	0	0
	터키	0	30%	-	-	-	-
	오스트리아	0	30%	0	0	0	0
	벨지움	0	35%	0	0	0	0
	덴마크	0	30%	0	0	0	0
	아이슬랜드	0	30%	0	0	0	0
	Czech Republic	0	30%	0	0	0	0
	핀란드	0	30%	0	0	0	0
	그리스	0	30%	0	0	0	0
	헝가리	0	30%	0	0	0	0
	아일랜드	0	30%	0	0	0	0
	룩셈부르크	0	30%	0	0	0	0
	네덜란드	0	30%	0	0	0	0
	노르웨이	0	30%	0	0	0	0
	포르투갈	0	30%	0	0	0	0
슬로바키아	0	30%	0	0	0	0	
스웨덴	0	30%	0	0	0	0	
스위스	0	30%	0	0	0	0	

주: '-': 보고가 되지 않거나 없는 경우
 자료: WHO, MPOWER, 2008.

5. 결론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제도는 여러 다른 담배규제정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더 효과적인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12월 시행된 담배갑 포장의 건강경고에 발암물질표기를 통해 건강경고가 더 강화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건강경고 및 표시제도의 본질적인 개선과제는 아직 남아있다.

1) 건강경고의 확대 및 그림경고의 도입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건강경고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건강경고의 크기를 확대하고, 위치를 눈에 더 잘 띄는 위쪽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건강경고(그림경고 포함)의 순환과 관련하여 어느정도의 순환기간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건강경고를 순환하는 많은 나라들에서 여러 가지 경고문의 세트를 1년 단위 내외로 순환하고 있다. 건강경고에 대한 흡연자의 인식이 점점 둔화되기 때문에 빈도를 점차 높게 할 것이 권고된다.

2) 오도문구의 금지

저타르, 라이트 및 마일드와 같이 건강에 덜 해로운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문구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 부분은

담배회사의 광고, 판촉, 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협약 제13조)에 의해서도 규제받아야 할 내용이다.

3) 방출물 및 성분 표기규제 완화

담배연기의 방출물 및 성분표기의 의무를 없애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행의 담배연기측정기에 의한 함량표기는 인간이 흡연하는 니코틴 및 타르함량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표기를 하지 않도록 권고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의무화되는 방출물 성분의 표기규제를 없애거나, 숫자표기를 하지 않는 다른 방안의 모색, 표기를 의무화하지 않는 방향 등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담배갑 포장 및 라벨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은 단순포장에 있다. 담배갑 포장의 디자인이나 다른 회사라벨관련 요소들로 인해 일반인이 잘 못 인식하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경고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금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앞서 본문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에서는 담배갑 포장 및 라벨규제의 도입 및 수정 후 6개월에서 9개월간의 메시지 인식과정과 흡연위험인식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효과적인 담배갑포장 및 라벨정책을 위해서 연구정보가 국내 축적되어야 하고, 국제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보건복지